

著作權法에 準한 圖書館奉仕에 관한 研究 —미국과 한국의 著作財產權의 制限規定을 중심으로—

金 香 辛*

〈목 차〉

| | |
|----------------------|---------------------|
| I. 서 븐 | 관 봉사 |
| II. 저작권법 | 1. 제한규정과 공중의 이용 |
| 1. 저작권보호의 의의와 범위 | 2. 정당한 사용(fair use) |
| 2. 저작권법의 역사적 배경 | 3. 도서관의 복제물 제공봉사 |
| 3. 미국의 저작권법 | IV. 저작권사용료 지불방식과 도서 |
| 4. 한국의 저작권법 | 관 봉사 |
| III.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과 도서 | V. 결 븐 |

I. 서 븐

문화공보부는 1984년 7월 5일에 저작권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하였고 이를 경기국회에 상정하여 통과되면 1986년 1월 1일을 기해 시행키로 했다.

이는 현행저작권법이 1957년 1월 28일에 제정공포된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채 현재까지 시행됨으로써 그 동안의 지식전달매체의 발달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저작권판례 국제조약의 가입을 위한 법적체제를 갖추기 위함이라 풀이된다.

문화공부의 개정방향에서 제시한 바와같이 저작권법이란 저작자⁽¹⁾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전임강사

(1) 저작권법에서 저작자라 함은 한국 저작권법 개정안 제 2 조의 정의에 의한다. 즉 모든 범주 의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2 도서판학논집

으로 한다면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에 일익을 담당해야하는 도서관계에 있어 서도 이 저작권법에 대한 깊은 이해는 업무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전제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Marshall McLuhan은 “Gutenberg made everybody a reader. Xerox makes everybody a publisher.”⁽²⁾라고 지식전달 수단의 발전과 복제에 대해 언급했다. 14세기 독일의 Johann Gutenberg가 인쇄활자를 발명한 이후 1937년 미국의 F. Carson의 복사기 발명, 1950년대의 고성능 복제기의 발달, 최근의 컴퓨터와 텔레컴ью니케이션에 의한 정보유통시설의 국제적인 이용 등은 이용자가 원하면 언제나 자료를 복제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 이것은 결파적으로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의 하나인 복제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복제권이란 저작자가 자기의 소유물인 저작물의 복제나 그 복제물의 판매에서 얻은 이익을 일정기간동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저작물의 일부 혹은 전부를 양도, 상속, 배포, 기증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시 말하면 저작자의 동의없이는 인쇄, 응용, 방송, 전시, 기타 어떠한 형태로든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인 것이다. 그러나 복제(reprography)란 광의로서 활자 발명 이전의 필사도 포함할 수 있으나 필자는 도서관 봉사로서의 복제행위를 논함에 있어 한국저작권법 개정안 제2조에 명시한 복제의 정의와 범위를 적용하여 배타적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에 한정하여 논하고자 한다.

저작물의 다양화와 고도로 발달한 인쇄매체에 따른 복제기술도 사진복사, 전자복사 및 비데오 복제등으로 발전하여 도서관 복제물 제공봉사에 혁신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판상호대차, 고문서보관소 등의 자료보존 및 이용자를 위한 복제를 제공에 있어 저작권법에 저촉됨이 없이 공정하게 이용시켜야 한다는 제약된 관점에서 볼 때는 도서관 업무수행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 것이다.

(2) Raymond A. Wall, "Photocopying Rights and Wrongs," *Astib Proceedings*, 34 : 2 (Feb. 1982), p.122. 재인용.

도서관 사서의 임무가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저작자의 복제권을 보호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이용자의 요구를 최대한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상충되는 목적을 달성시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고 저작자의 창작물을 널리 이용시킴으로써 문화창달에 공헌하기 위해서 저작자의 권리보호에 대해 제한규정을 두게 되는 것이다. 한국저작권법 개정안에서는 제2장 제6절 「저작재산권의 제한」으로, 신미국저작권법에서는 「section 107 (fair use)와 section 108 (library reproduction)」으로, 각각 정하여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도서관 복제물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허용규정이 도서관 자료를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반면에 그 규정의 적용문제는 도서관 업무상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한규정에 준한 도서관 복제물제공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연구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 필자는 한국저작권법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고 이에 준해서 시행령이 확정될 것을 전제로 하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개정안이 국제조약의 가입을 전제로 하여 대륙법계통의 국가들의 법률을 참고하였으나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은 미국의 신저작권법상의 기본이념을 많이 참조했기 때문에 이 제한규정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도서관 봉사문제는 미국의 예를先例로 삼아 비교 검토해 보았다.

필자는 이 글에서 도서관 봉사에 있어서 저작권보호의 의의와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 저작권법 전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으며 저작권법을 도서관 자료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적용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과 발생 가능성에 있는 문제를 문현을 통해서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개정이 도서관 봉사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II. 저작권법

1. 저작권보호의 의의와 범위

저작권(copyright)은 독일어로 「Urheberrecht」(저작권), 불란서어로는 「droit d'auteur」(저작자의 권리)의 뜻으로 표기한다. 그 기본개념은 저작권은 특권이라는 이론(privilege theory)⁽³⁾과 재산권이라는 이론(property theory)⁽⁴⁾에 입각하여 적용되었다.

특권이라는 이론은 저작권이 저작자의 권리(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 부여된 그의 저작물에 대한 통제권으로서 저작권소유자에게만 배타적으로 권리(권리)를 주는 특혜라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을 말한다.

저작이란 행위가 인간이 지적으로 창출해낸 구체적인 창작물이라는 점으로 보아 창출해낸 무형, 유형의 정신적 소산에 대해 다른 재산권과 똑같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재산권이라는 관점에서 재산권이론이 널리 통용되어 채권이나 물권처럼 양도, 상속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정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저작권보호의 목적은 저작자에게 그의 노력에 대한 응분의 엣가를 지불하는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창의력을 자극함으로써 인류의 선을 추구하기 위한 것⁽⁵⁾이라고 공표하여 공중의 이용을 통하여 인류의 선을 추구하는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저작권이 단순한 재산권이라면 절대적인 보호 및 권리보장을 해주어야 하지만 저작권은 인류의 선을 추구하기 위해 공동의 이용과 접근이 가능하도록 사회적으로 제제를 받는 권리(socially bound right)⁽⁶⁾임을 뜻하는 것이다. 이는 저작권보호의 제한규정으로서 공공의 이용을 위한 도

(3) Dorothy M. Schrader, "Armageddon in International Copyright," in *Advances in Librarian ship*, ed. by Melvin J. Voigt (New York : Seminar Press, 1971), p.308.

(4) *Ibid.*

(5) Donald F. Johnston, *Copyright Handbook*, 2nd ed. (New York : R.R. Bowker, 1982), p.3.

(6) Schrader, *op. cit.*, p.308.

서판의 복제물제공봉사가 저작자의 권리에 우선하도록 하는것은 법의 이념에 입각한 것임을 말한다.

저작권보호의 대상은 각국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한국저작권법 개정안 제4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자본, 그밖의 語文著作物
- ② 음악저작물
- ③ 연극및 무용, 무언극등을 포함한 연극저작물
- ④ 회화, 서화, 圖畫, 조각공예, 응용미술 작품, 건축물 및 그 도면을 포함하는 미술저작물
- ⑤ 사진및 이에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 ⑥ 영화저작물
- ⑦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밖의 도형저작물

이상은 미국 신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의 범주와 거의 일치하고 있어 미국의 도서관 복제물제공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 비교, 검토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2. 저작권법의 역사적 배경

저작권법의 역사는 지식 및 정보의 전달수단의 발달과정과 관련하여 그 기원을 찾아 볼 수 있겠다.

지식의 전달및 보급은 그리스·로마시대에는 노예에 의한 사본이였으며 중세의 수도원에서는 종교서적을 보급하기 위해 별사본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구텐베르그의 인쇄술 발명과 그후 조판술의 발명은 서적을 대량으로 제작, 판매할 수 있게했고 따라서 지적 창작물인 책은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의 대상이 되었다. 봉건제도하에서는 영주가 특정한 인쇄업자를 지정하여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인 특혜를 주었고 이는 인쇄업자의 경쟁과 투기의 형태로 변용됨으로써 드디어는 저작권의 보호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6세기 영국에서는 도서출판조합(Company of Stationers)에 대해 인쇄허가를 등록해 한으로써 위판을 폐지하도록 시도했다.⁽⁷⁾

이러한 저작권보호책으로 1710년 4월 10일에 엔여왕법(Queen Annis Sta-

(7) 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著作權의 國權的 保護 (서울: 국회도서관, 1978), p.6.

6 도서판학논집

tute)이 공포되었으며 이 법은 학문의 장려를 위해 법정기간동안 인쇄된 복제물에 대한 권리(저작자 또는 구매자에게 귀속시키도록 규정한 법)으로서 개인적 권리(인정하는 현대적 의미에 있어서 최초의 저작권법이다).⁽⁸⁾

한 국가의 출판질서와 문화발전을 촉진시키는 동기유발적인 방안으로서 각국에서는 저작권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저작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791년 저작권법을 제정하여 공연권을; 1793년에는 복제권을 추가했고 미국에서도 1789년 마사추세츠 주법을, 1790년에는 연방 저작권법을 각각 제정했다. 19세기 초에는 미국과 중남미诸국들은 汎美條約을 맺어 다국간의 저작권 보호를 해오고 있다.

국제적인 조약은 가맹국의 지리적 입장과 문화적 교류등의 여건에 따라 세 가지 형태⁽⁹⁾로 성립되어 발전해 왔다.

① 양국간의 협약은 국제협약의 최소단위인 쌍방국간의 협약으로 상대국의 저작자를 자기나라 저작자와 똑같이 보호해주는 조약이다. ② 지역적 협약은 양국간의 협약만으로는 자기나라 저작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을 경우 극단지역 국가간에 체결하는 협약이다. ③ 다국간의 협약은 범세계적인 협약으로서 저작물의 상거래를 증가시키고 문화의 수출국인 자기나라의 저작권보호를 범세계적으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국가들의 압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협약이다.

저작물의 국제시장화로 인한 문화의 유통 및 교류로 말미암아 저작권의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하게 되었으나 각국의 보호규정과 제도가 각각 상이하여 범세계적인 조약기구를 설립하기엔 많은 난점이 있었다. 즉 로마법 전통을 계승한 국가, 영글로색 혼족의 법률전통을 계승한 국가,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를 반영한 국가등 서로 다른 법률전통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범세계적인 조약의 필요성은 1886년 9월 9일 스위스의 수도 베른에서 「문학 및 예술 저작물보호에 관한 베른협약」(The Berne Con-

(8) 유네스코 편. 白承吉, 朴顯喜역, 著作權이란 무엇인가 (서울: 보성사, 1983).

(9) Ibid., pp. 93—94.

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을 성립시켰다. 이 조약은 호혜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고 자유로이 가맹할 수 있으며 무방식 주의로써 오식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협약이다. 제1차 베를린 규정(1908), 제2차 로마규정(1928) 제3차 브뤼셀 규정(1948) 제4차 스톡홀름 규정(1967), 제5차 파리규정(1971)으로 개정하는 동안 개정할 때마다 기존 가맹국의 비준이나 신규가입국가가 다르고 그 국가가 가입하거나 비준한 규정에만 구속을 받게 되어있다. 1983년 1월 현재 가맹국수는 74개국이며⁽¹⁰⁾ 이를 국가가 각각 다른 규정을 비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규정을 적용하는 복잡한 문제는 도서관 업무에 있어서도 문제를 야기시키게 하는 점이다.

UNESCO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한 베른조약 가맹국의 저작물이 방식주의를 취한 법미조약 가입국에서 문화전통이 다르고 이익이 상충됨으로써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이 분쟁을 타결하기 위해 세계저작권조약(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C.C.)를 성립시키도록 주선했다. 이 U.C.C.는 1952년 제네바에서 채택되어 1955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1971년 파리에서 개정되어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혜조항이 추가되었으며 197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되어 왔다.⁽¹¹⁾ 1981년 말 현재 74개국 중 50개국이 베른조약에도 동시에 가입하고 있으며⁽¹²⁾ 내국민 대우를 원칙으로 하고 모든 저작물에 저작권 취득년도를 뜻하는 「C」 혹은 「Copyright」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3. 미국의 저작권법

미국에서의 최초의 저작권법은 1789년의 마사츄 сет츠주법이며 1790년에는 최초의 연방저작권법이 입법되어 1831년, 1870년, 1909년에 개정되어 오다가 1976년 10월 19일 전면 개정이 되어 포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미국 공법 제 94-533으로 제정 공포되었으며⁽¹³⁾ 1978년 1월 1일을 기해 발효되

(10) 허회성, 國際著作權動向과 우리 (서울: 미한출판문화협회, 1984). p.11.

(11) Johnston, *op. cit.*, p.123.

(12) 허회성, *op. cit.*, p.62.

(13) Edward G. Holley, "A Librarian Looks at the New Copyright Law," *American Libra-*

었다. 미국은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 국제조약의 가입을 미루어 오다가 1955년 세계저작권조약의 주도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었으며 이 조약에 준해서 신저작권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신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1909년의 구법과 다르다. ① 유형, 무형의 저작물은 창작되는 순간부터 보호를 받는다. ② 저작권보호 기간이 저작자의 일생기간과 사후 50년으로 연장되었다. ③ 무방식주의로 등록이 필요없고 공소제기를 위해 저작권 표시는 일반 배부용 복제물과 기계가독형 자료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 터미널과 기계가독 복사기에 표시된다. ④ 저작권의 공공의 이용을 위해서 정당한 사용(fair use)을 확정시켰다. ⑤ 저작물을 일부 혹은 전부를 양도, 상속, 기증, 배포할 수 있다.

4. 한국의 저작권법

한국의 저작권법의 기본이념은 헌법 제18조 언론, 출판의 자유, 제19조 1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19조 2항 저작자, 예술가의 권리보장, 제20조 재산권의 보장 등의 법조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¹⁴⁾ 또한 민법상 소유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손해배상 청구권, 권리의 이전 및 담보를 할 수 있는 재산권이며 공업적 意匠이 저작권법상의 응용미술 저작물과 그 대상을 구별하기 어려운 점은 의장법, 특허법과 같은 공업소유권과도 연관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¹⁵⁾

한국 저작권법은 1957년 초기의 베른조약을 모방한 일본의 명치시대의 일본 구저작권법을 다시 모방하여 제정하였고⁽¹⁶⁾ 그후 27년 동안 개정하지 못하고 1984년 7월 5일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하여 경기국회에 상정하기에 이르렀다.

ries, 18 (May 1977), p. 249.

(14)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op. cit.*, pp. 8-9.

(15) *Ibid.*

(16) 李斗煥, “著作権法과 出版,” 國會圖書館報, 21 : 3 (1984. 5), p. 23.

개정안은 9장 100조와 부칙 1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륙법 계통의 독일법을 주로 참조하였으나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법이념을 참조하였음은 이미 앞장에서 밝힌 바 있다.

주요내용은 ①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일생과 사후 50년으로 연장했다. (제32조) ② 저작물이 창작되는 순간부터 보호를 받도록 했으며(제 9조) 무방식주의를 채택하여 요식절차가 필요없다. (제 9조) ③ 저작인접권을 신설하여 실연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의 권리도 인정했다. (제59조~제71조) ④ 분쟁조정을 위해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를 문공부 산하에 두고(제79조~87조) 비영리법인인 저작권 위탁관리업 제도를 신설했다. (제76조~제88조) ⑤ 외국인 저작물을 위해서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했다. (제 3 조) ⑥ 저작물의 공공이용을 위해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을 두었다. (제19조~31조) 이 규정은 도서관복제물 제공봉사와 관련하여 다음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III.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과 도서관봉사

1. 제한규정과 공중의 이용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저작자의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으나 인류발전을 위해 공중의 이용을 허용해야 하는 사회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에 저작자의 재산권에 대해 제한을 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제한 규정이 곧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인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인 제한을 받는 도서관 자료를 다음과 같은 범주로 대별해 볼 수 있겠다. ①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저작권이 공공영역으로 귀속되는 경우 ② 정부간행물의 경우 ③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 조건 하에서 그저작권보호기간 동안에도 저작자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등이다.

①의 경우는 자연스러운 법의 시효만료로써 발생하는 제외규정이며 ②의 경우는 국민의 조세로써 빌간되는 저작물이며 저작자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국립과학기술정보기관인(The 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 NTIS)에서는 이러한 정부간행물 역시 저작권보호를 적용시킬려고 추진중에 있다.⁽¹⁷⁾ ③의 경우는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 즉 공중의 요구에 의해 적극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규정인 것이다.

이 적극적인 제한이란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 즉 ① 복제 ② 원저작물로부터 제2차적인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 ③ 배포 ④ 공연 ⑤ 전시 등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저작자의 허락없이 공중이 이용하는 것을 정당화 시켜주는 규정을 말한다.

이러한 제한규정은 로마법 전통을 따르고 있는 한국의 저작권법개정안에는 제2장 제6절 「著作財產權의 제한」 규정으로 제19조 재판 절차 등에서의 복제, 제20조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제21조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 제22조 인용, 제23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 제24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25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제26조 시험 문제로서의 복제, 제27조 點字에 의한 복제, 제28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 제29조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제30조 출처의 명시 제31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제2장 제10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으로 제45조 저작재산자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제46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제47조 판매 용음반의 제작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잉글로색 손족의 법률전통을 따르고 있는 미국의 경우 법규정으로는 제재를 가하지 않고 다만 판례나 판례에 따라 저작물 제공자와 사용자가 서로 타협점을 찾아 양자간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타결하도록 노력해 왔다.

1935년 출판업자협회와 사회과학분야의 학회가 연구단체협의회는 소위 선사협정(The Gentleman's Agreement)을 맺어 출판사의 영리를 침해하지

(17) Holley, *op. cit.* p. 247.

않은 범위내에서 연구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¹⁸⁾ 그후 The Private Right of Copy, the Single Copy Policy 등에⁽¹⁹⁾ 입각하여 행해오다가 드디어 공정한 사용(fair dealing)⁽²⁰⁾이라는 개념으로 정당한 사용(fair use)의 규정이 1976년 신미국 저작권법상 Section 107로 확정되어 배타적인 권리에 대한 제한규정이 되었다.

이 제한규정을 한국의 개정안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과 비교하여 상용하는 범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당한 사용(fair use)에는 제19조~제24조, 제28조가 ② 연구및 교수용 자료이용(class-room teaching activities)에는 제20조, 제26조, 제27조가 ③ 도서관 복제물제공봉사(library reproduction)에는 제25조가 ④ 공연전시에 관한 제한규정(limits on public performance & display)에는 제29조, 제30조가 ⑤ 의무허가제(compulsory licenses or statutory licenses)에는 제45조, 제47조가 각각 같은 내용의 규정이다.

위에서 비교해본 바와같이 미국의 신저작권상의 제한규정이 한국의 개정안의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과 대동소이 하고 그 법적 기본취지가 같기 때문에 이 규정이 영향을 미치는 도서관 봉사의 영역과 문제점을 고찰함에 있어 미국에서 이미 검토한 것을 선례로 삼고자 한다.

1980년 미국 저작권 사무소(Copyright Office)가 조사전문기관인 King Research Inc. (KRI)에 의뢰하여 저작권보호에 대한 제한규정의 시행으로 인한 도서관 문제를 조사 분석도록 했고 이 보고서는 1982년 제출되었다.⁽²¹⁾

이때 사용했던 실태조사 설문지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그 제한규정이 영향을 미치는 도서관 업무의 범주를 종합해 볼 수가 있다. ① 이용횟수 ② 복사료 수납 ③ 복사 승인신청 ④ 저작료 지불 ⑤ 도서판 상호대차

(18) Hahn Soon-Chung, "The Copyright Problems in Library Reprography," 圖書館報, 제11집 (1984), p.189. (in English)

(19) *Ibid.*

(20) 유네스코(편), *op. cit.*, p.56.

(21) Nancy H. Marshall, "Register of Copyrights' Five-Year Review Report," *Library Trends*, 32 : 2 (Fall 1983), pp.169-170.

12. 도서관학논집

이용 ⑥ 넷웤 업무 수행 ⑦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 업무 ⑧ 정당한 사용의 정책 ⑨ 지정도서제도 운영 ⑩ 시청자자료 이용 ⑪ 철판편 자료의 보완 ⑫ 분실 혹은 파손된 자료의 보충 ⑬ 복사기 설치 ⑭ 기록업무 등이다.

이 설문지의 내용은 도서관 업무로서 일반적인 도서관업무에 저작권에 관련된 업무가 얼마나 많이 더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해 주고 있고 또한 도서관 복사를 제공이 이루어지는 형태와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시사해 주고 있다.

2. 정당한 사용(Fair Use)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의 하나인 정당한 사용(fair use)는 도서관 복제물 제공봉사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규정으로서 이 규정의 적용가부 및 범위는 도서관 봉사의 영역과 그 효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Fair Use의 개념은 정부의 한 관리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전기 *Writings of Washington* 중에서 많은 문서와 서한을 복제, 인용하여 또 다른 전기인 *Washington in the Form of an Autobiography*를 저술함으로써 빌단이 된 1841년의 법정투쟁에서 그 인용과 복제가 정당하다고 (justifiable use)⁽²²⁾ 한 판례에서 비롯되었다. 그후 1896년부터는 fair use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1976년 신미국 저작권법상의 Section 107로 확정되었 다.⁽²³⁾

그러나 Horowitz 교수가 지적했듯이 fair use는 평계의 규정(a rule of reason)으로서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를 주었다.⁽²⁴⁾ 왜냐하면 fair use의 규정이 구체적인 사례를 다 예시(例示)하지 못하고 또한 포괄하지 못한 법률적 개념에서 성립되었기 때문에 사소한 복제가 여러번 행해짐으로써 결국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22) Johnston, *op. cit.*, p.131.

(23) *Ibid.*

(24) Horowitz, *op. cit.*, p.68.

fair use의 이러한 법적 모호성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의 4가지 요소⁽²⁵⁾에 따라 그 적용의 타당성을 결정하고 있다.

- ① 그 저작물의 전체량에 대한 복제량과 복제된 분량의 실제적 사용성
- ② 사용 목적과 그 특성
- ③ 복제행위가 영리적인 면에서 그 저작물의 시장성에 미치는 영향력
- ④ 저작물의 본질

위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 복제물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복제물의 양을 결정하는 것은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즉 단행본의 경우, 경기간행물의 경우, 신문기사 및 도표, 사진들의 경우, 시청각 자료의 경우 등에 따라 복제량에 제한을 받으며 또한 그 저작물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어느 정도 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복사를 사용의 목적이 비영리적인 연구및 교육적 목적 (scholarship)⁽²⁶⁾이나 시사보도, 시평(criticism)⁽²⁷⁾등이여야 함은 물론이며 공중의 관심과 필요성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정보의 접근을 (public access to information)⁽²⁸⁾용이하게 해주는 목적이여야 하며 그러한 성격을 위한 복제이여야 한다.

저작물을 복제함으로써 그 저작물의 시장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업적인 해석판의 성격을 띤 복제행위는 금지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영리목적의 연구기판에 소속된 연구원이 직접적으로는 상업적이거나 영리적이 아닌 연구목적으로 복사를 요구했을 경우 그 연구결과가 그 영리기판의 영리적 목적달성을 위한 것일 경우 이에 대한 fair use의 적용문제 등은 모호해지는 것이다.

또한 저작물의 본질 그 자체가 일반 이용자들의 복제를 허용하는 참고도서나 공중에게 행했던 연설집의 경우가 있는 반면 저작물 자체가 1회 사용으로 소모되는 연습용 교재등은 절대로 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25) Johnston, *op. cit.*, p.132.

(26) *Ibid.*, p.133.

(27) *Ibid.*

(28) Roger D. Billings, Jr., "Fair Use under the 1976 Copyright Act," *Library Trends*, 32 : 2 (Fall 1983), p.192.

14 도서관학논집

fair use에 의해 학교 교재용으로 자료를 복제할 경우 ① 도서관 지정도서제도용으로 교사가 수업 및 과제를 위해 미리 자료를 복제하여 열람용으로 도서관에 비치해 놓은 도서관 자료봉사용 ② 수업을 위한 교실내에서의 배포용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도서관 지정도서제도 운영을 위해서 ① 복제량의 한계성(brevity)⁽²⁹⁾은 그 교재용 자료의 종류, 용도에 따라 결정지워지지탄 가능한 한 분량은 제한하여야 하며 ② 저작자의 협력을 얻는데 시간적으로 급하고 수업의 효과를 최대로 높이기 위해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spontaneity)⁽³⁰⁾ ③ 의도적으로 집단적인 배포를하거나 동일한 자료를 여러번 일부분씩 복제하여 결과적으로는 전체를 복제하는 효과나 여러부를 복제하게 되는 효과를 얻는것(cumulative effect)⁽³¹⁾등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이 필요하다.

교실내에서의 배포용의 경우에도 fair use의 적용여부를 위한 기준으로 미국 의회에서 제시한 3가지 요소⁽³²⁾를 감안해야 한다. ① 비영리적 요소: 비영리 교육기관에서 교육적인 목적을 위한것이여야 함 ② 복제행위자: 교사가 복제하는 경우인지 혹은 학교 당국이 복제하여 배부해 주는 경우인지에 따라 fair use 적용여부를 결정함 ③ 저자의 양: 교재의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즉 녹음테이프의 경우 1회 작동으로 전 이용자를 충족시켜 주지반정기간행물의 경우 학생수에 따라 복사량을 결정짓게 되는 것.

fair use 적용의 대상도 일반 인쇄매체로 된 도서 및 경기간행물, 흥행영역에 이미 귀속된 임법자료 및 정부간행물에서부터 무선 녹음 및 녹화, 음반 및 음악적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확대되었다.

임법자료나 정부간행물의 경우 fair use이 적용은 공무원의 신분인지 또

(29) Johnston, *op. cit.*, p.151.

(30) *Ibid.*

(31) *Ibid.*

(32) *Ibid.*, p.148.

는 풍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적용하고 입법자료의 경우 입안자가 불분명할 경우 유권해석이 복잡하지만 공중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는 이념하에서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있다.⁽³³⁾ 한국의 경우에는 정부 간행물이나 입법자료에 대해서는 제 6조에 의해 아예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 봉사에 따른 문제가 없는 자료이다.

연주에 사용되는 악보, 녹음되어 있는 테이프 및 음반은 비영리 목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적으로 사용할 경우와 종교적 목적으로 교회에서 사용할 경우는 fair use가 적용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fair use 적용의 여부에 따른 문제와 적법한 적용을 위해 미 의회입법위원회(The House Judiciary Committee)는 1976년 신저작권법의 세정의 준비로 음악적 저작물과 도서 및 정기간행물에 적용할 지침서 「Legislative History's Fair Use Guidelines for Educators: ① Books and Periodicals Guidelines ② Music Guidelines」을 마련하였다.

지침서는 fair use 적용에 있어 최소한의 적정선에서의 합리적인 유권해석(a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minimum standard of fair use)⁽³⁴⁾으로서 저작자, 출판업자, 그리고 사용자를 동시에 보호해주기 위한 시도이다.

비데오 테이프의 녹음 및 녹화에 따른 fair use 적용을 위해 1976년 House Committee에서는 「Videotaping for General Educational Uses」라는 지침서를 제시했다. 1981년 10월 저작권소유자, 창작자조합 대표, 연구 및 교육기관 대표들은 상호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재위원회를 조직하여 「1981 Negotiated Guidelines Concerning Off-Air Videorecording and Fair Use in Education」이란 지침을 제시했다. 이는 TV 프로그램의 교수용, 평가용, 교재용으로써의 복제 및 보유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fair use의 적용문

(33) Billings, Jr., *op. cit.*, p.190.

(34) "1976 House Report." The September 22, 1976 Copyright Law Revision Report of the House Committee on the Judiciary, 94th Congress, 2nd Session, 1976, H.R. Report No. 94-1476, p.72. 재인용함.

제와 도서관의 복제물제공에 따른 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가정에서의 비데오테이프 녹화는 연구조사용(productive use: research)⁽³⁵⁾ 이 아닌 오락용(intrinsic use: entertainment)⁽³⁶⁾로서의 복제는 fair use에 저촉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어 도서관에서도 연구용의 경우에 한하여 복제물제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는 Section 117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computer program)으로 규정되어 있고 CONTU (The National Commission of the New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ed Works) 의 연구결과 '컴퓨터 데이타베이스에 대한 보호규정이 1980년 수정저작권법 「The Computer Software Copyright Act of 1980」은 미국공법 PL 96517 으로 카터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었다.⁽³⁷⁾

컴퓨터 프로그램은 테이프, 디스크, chip, 혹은 카드 형태로 문자, 숫자 및 기호로 표기되어 있지만 저작권법에서는 일반적인 언어적 저작물(literary work)과 같이 취급한다.⁽³⁸⁾ 다시 말하면 flow chart, source code, object code, silicon chip 등도 모두 저작권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컴퓨터 데이타베이스는 Section 117 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저작권법상 다른 규정에 의해 적용된다. 즉 여러 저작물의 편집물의 경우나 기존자료를 번역, 번안, 소설화등과 같은 제2차 저작물 규정에 적용하여 보호할 수 있고, fair use도 적용할 수 있다.

데이타베이스는 저작권법상 3가지 측면 즉 압력, fair use, display와 publication의 관계⁽³⁹⁾에서 고찰해야 한다.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입력시킨 것은 보호를 받으며 다른 인쇄매체로 된 자료와 똑같이 fair use를 적용하여 display 해서 검색하고 난 후 바로 저작권표시를 display 하지 않으면 저

(35) Billings, Jr., *op. cit.*, p.187.

(36) *Ibid.*

(37) Mary Wolfe, "Copyright and Machine Readable Database," *Online*, 6:4 (July 1982), p.54.

(38) Billings, Jr., *op. cit.*, p.188.

(39) Wolfe, *op. cit.*, p.54.

작권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display 함으로써 검색한 것을 프린트 아웃으로 만들지 않고 지워버릴 경우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서지적 데이터베이스일 경우 저자명, 서명등 일반적인 목록업무사항은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해제, 분류번호, 주제명표목 등의 정보는 저작권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컴퓨터의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는 기계 가독형 자료로서 특수한 검색방법을 요하기 때문에, 임력 당시의 원저작물 (original text or work)의 저작자를 추적하여 보호하는 일이다. MIT의 Pool 교수는 처음 임력된 형태로의 원저작물을 추적하는 것은 일상생활의 대화중에서 대화의 처음시작(the origin of a conversation)을 추적하는 것 단락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⁴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규정은 없으나 이상과 같이 fair use 적용을 자료의 형태, 본질, 사용용도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수있도록 도서관 복제물 제공봉사에 영향을 미치는 fair use의 적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3. 도서관의 복제물 제공 봉사

도서관 복제물 제공봉사는 ① 도서관내에서 사서에 의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② 중앙도서관 사서에 의해 분관도서관에 제공되는 경우 ③ 도서관내에 설치된 복사기에 의해 이용자가 행하는 경우 ④ 도서관 상호대차에 의해 제공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떠한 형태의 복제물을 제공할 경우에도 사서는 fair use 적용에 대한 지침과 도서관 복제물제공 규정을 상호보완함으로써 이용자의 요구를 최대한으로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fair use 만으로는 복제가 불가능할 경우, 혹은 그 적용여부가 불분명할

(40) Billings, Jr., *op. cit.*, p.189.

경우에 도서관 복제물제공의 허용규정⁽⁴¹⁾에 의해 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fair use와 함께 서로 보완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폴이하고 있다.⁽⁴²⁾

도서관 복제물제공을 위한 신미국저작권법 Section 108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reproduction by libraries and archives)와 한국 저작권법 개정안 제25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⁴³⁾를 비교, 겸토함으로써 그 제공범위를 확실히 하고자 한다.

한국의 개정안 제25조에는 ①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동자의 요구에 따라 公表된 저작물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제공(1人 1部에 한한다.)하는 경우, ② 도서관 등이 자료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결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등으로 그 범위를 용도별로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신저작권법에서는 Section 108의 ⑧항에서 ①항에 결코 좀더 구체적으로 그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⑧ 동일 저작물에 각 1부에 한해서 복제할 수 있다. ⑨ 자료의 보존과 타 도서관 이용을 위한 비치용으로 아직 公表되지 않은 자료에 대한 복제 ⑩ 파본, 결본을 대체하기 위한 복제 ⑪ 전집이나 정기간행물의 경우 1가지 기사 혹은 전집중의 한 작품이내의 복제 ⑫ 저작물 전체의 복제 ⑬ 자동복사기에 의한 복제일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해 그 설치 도서관에 대한 제제 ⑭ 조직적인 유통과정을 통한 집단적인 복제금지와 동일한 저작물을 1회에 1부 이상 복제할 수 없음 ⑮ fair use에 저촉되지 않는 음악적 저작물, 그림, 그래프, 조소적 저작물, 영화 기타 시청자 자료를 제외함 ⑯ 저작권 사무소는 신저작권법 시행후 5개년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

⑧항과 ①항에 결친 도서관 복제물 제공을 자료의 형태와 목적에 따라 구

(41) 이 규정에서는 도서관과 고문서 보관소를 통일하게 포함적으로 적용시키고 있으나 이 둘에서는 도서관으로만 표기한다.

(42) Johnston, *op. cit.*, p.162.

(43) 도서관법에 규정된 도서관 및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을 도서관 등이라 칭한다.

분해 보면 ① 公表되지 않은 저작물의 보존용과 도서관 상호대차용 ② 公表된 저작물의 파본 및 결본의 대체용 ③ 정기간행물 기사 혹은 모음집 출간용으로 이용자가 신청한 이용자용 ④ 저작물 전부 혹은 핵심적인 부분의 이용자용 복제 ⑤ 시청작적인 뉴스 프로그램의 연구조사용 등이다.

어떠한 자료의 종류나 속성에 불문하고 Section 108을 적용시키는데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적용기준⁽⁴⁴⁾을 고찰함으로써 구체적인 문제에 통착할 때 적절한 판단과 유권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① 도서관 상호대차 제도의 시행여부(collections accessibility): 자료의 공동이용이라는 차원에서 타도서관이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함은 도서관 상호대차의 대전제인 것이다.

② 상업적 이득의 여부(no commercial advantage): 복제의 동기가 영리목적이 아니여야 한다는 것은 fair use의 요건과 같으나 이 규정에서는 좀 더 광의로 적용이 된다. 즉 비록 영리목적의 기관에 소속된 도서관이라 할지라도 사용용도가 상업적이 아니면 상호대차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복제를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③ 분량의 제한으로 단 1부에만 한정된다는 요건(single copy): 자료의 일부 혹은 전체를 단 1부에 한해서 복사할 수 있다. ④ 그 이전에 복제한 일이 있는 자료를 계속해서 혹은 이전의 복제들과 관계지워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할 수 없다(isolated-unrelated copy) ⑤ 동일한 자료를 동일한 경우에 사용하고자 여러부수를 집단적으로 복제할 수 없다(no related-concerted copying): 이 조건은 편법을 써서 기피할 수 있는 기준이다. 예를들면 시간차를 두고 여러차례 따로 따로 복제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Section 108의 ⑥항은 바로 이러한 복제물 배포를 금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에 대해 CONTU의 지침은 「rule of five」(five copies, five years of issues)⁽⁴⁵⁾ 즉 복제 신청일을 현재로 5년 이내의 간행물에서 동일한 기사

(44) Johnston, *op. cit.*, p.168.

(45) *Ibid.*, p.173.

20 도서관학논집

혹은 각각 다른 기사를 총 5부 이상 복제할 수 없다는 지침을 제시하여 도서관 상호대차를 위한 복제물 제공에 적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⑥ 저작권 소지에 대한 통지의 첨부(copyright notice): 도서관 상호대차용 복제물에는 반드시 저작권보호를 받고 있는 저작물의 복제임을 주지시켜 주는 통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그 도서관의 다른 계약과의 저촉여부(no conflicting agreement): 복제를 안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된 저작물은 그 계약에 따라 복제를 금한다.

미국의 신저작권법 시행을 위해 1976년 KRI가 행한 전국적인 도서관 복제물 제공 실태조사(National Library Survey)의 통계에 따르면⁽⁴⁶⁾ 종복제물 제공 중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비율은 특수도서관의 경우 69%, 학술연구 도서관의 경우 48%로서 저작권이 있는 자료가 $\frac{1}{2}$ 이 넘고 있을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료의 종류별로는 정기간행물이 종복제량의 약 40%, 리포트, 팸플렛, 악보등 대부분이 저작권이 없는 기타자료가 약 50%, 일반도서가 약 10%로서 정기간행물이 저작권 있는 자료중 가장 많은 복제의 대상이었다.⁽⁴⁷⁾

이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이점을 감안하여 정기간행물의 복제량을 ① 과학기술 정기간행물 기사 ② 비과학기술 정기간행물 기사 ③ 신문잡지기사로 분류하여 관종별로 비교를 해본 결과 어느 관종에서나 과학기술 정기간행물의 복제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특히 특수 도서관에서는 87%, 학술연구 도서관에서는 65%의 복제량을 차지하고 있어⁽⁴⁸⁾ 정기간행물중 과학기술에 대한 기사 즉 최신성을 요구하는 간행물의 이용도를 나타냄과 동시에 도서관은 그 이용자의 요구를 도서관 상호대차에 의해서 충족시켜 주고 있다는 점, 따라서 각 도서관에서는 더 많은 정기간행물을 구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46) King Research Inc., *Library Photocopying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7), p.3.

(47) *Ibid.*, p.30.

(48) *Ibid.*, p.31.

Raymond A. Wall⁽⁴⁹⁾ 교수는 도서관에서 정기간행물 구독을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하여 그 구독의 가부를 결정짓는데 다음과같은 공식⁽⁵⁰⁾을 주장하고 있다.

$$\begin{aligned} & \text{subject relevance + quality + teaching/research need} \\ & + \text{affordable cost} = \text{degree of desirability} \end{aligned}$$

위의 공식에서 「affordable cost」란 그 도서관의 한정된 예산과 구독료 책정에 따른 재정적인 요인인 것이다. 재정적인 여건으로 정기간행물을 구독하지 않고 도서관 상호대차를 통한 복제물 제공으로 이용자의 요구를 대신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여 구독신청을 줄이거나 취소해서는 안된다. 이같은 결정은 저작물의 시장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fair use 나 도서관 복제물 제공의 협용 규정에 저촉이 되기 때문이다.

IV. 저작권사용료 지불방식과 도서관 봉사

앞장의 KRI의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도서관 복제를 이용이 증가됨에 따라 저작권사용료 지불문제 또한 도서관 업무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운 물론이다.

저작권사용료 지불방식(royalty payment mechanism)은 문현, 정보, 사용료 지불에 따른 다음과 같은 6가지 수속절차 및 유통과정⁽⁵¹⁾을 거쳐야 한다. ① 복사를 신청과정 ② 신청 도서관에서 그 자료에 대한 사항을 그 처리기구에 알리는 과정 ③ 저작권사용료 지불과정 ④ 복제승인 신청 과정 ⑤ 저작권 소유자로 부터 신청도서관에 보내는 복사승인 통보과정 ⑥ 도서관상호대차를 이용하여 복사를 실제로 제공하는 과정

이상과 같은 수속절차 및 유통과정은 ① 신속성 ② 정확성 ③ 수행과정에 드는 비용 ④ 관리 및 시설에 따르는 운영비 등의 기준을⁽⁵²⁾ 적용하여 가장

(49) 영국의 Loughborough Univ. of Technology 의 교수임.

(50) Wall., *op. cit.*, p.118.

(51) King Research, Inc., *op. cit.*, p.160.

(52) *Ibid.*

효율적인 저작권 사용료 지불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며 그 도서관의 규모와 자료의 이용도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KRI는 The Copyright Royalty Library Survey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9가지의 지불방식⁽⁵³⁾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fair use에서 나치침서에서 지적한 분량을 초과한 복제물을 제공하기 위해 정기간행물과 일반도서별로 앞에서 지적한 평가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그 도서관의 정책 및 용도에 맞는 사용료 지불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① 중앙집중식 처리기구에서 복제물을 사오는 방식 ② 개개의 출판업자를 통해 복제물을 구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 ③ 필요한 정기간행물 경가에 추가금을 지불하여 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④ 모든 구독 정기간행물에 미리 저작권 사용료를 내고 구독하여 자유로이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⑤ 이용도가 높은 도서관에서는 출판사와 직접 계약을 맺어 복제물을 제공하는 방식 ⑥ 저작권 사용료 집중처리 기구를 통해 복제물을 제공하는 방식 ⑦ 중앙집중처리기구로 부터 사용료 짹지나 쿠폰을 사서 복제물에 붙여서 사용함으로써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 ⑧ 기존에 있는 자료복제물 제공기관으로 하여금 이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신설해서 이 부서를 통해 이 부서를 통해 사용료를 지불함으로써 복제물을 제공하는 방식 ⑨ 복제기에 복제할 때마다 복제료를 넣고 그것을 중앙집중처리 기구를 통해서 송금하는 방식

그러나 위의 방식의 대부분이 적법성에 있어 많은 불확실한 요소가 제재되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몇가지 원인⁽⁵⁴⁾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복제물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혹은 고의적으로 배포하는 기관에 대한 「systematic」이라는 추상적이고 불확정한 제한 ② 공공영역에 이미 귀속된 저작물의 한계성에 대한 보호함 ③ 「rule of five」에 있어서 정기간행물의 복제신청일로부터 거슬러 5년이내라는 제한에 대한 불이행 가능성

(53) *Ibid.*, p.162.

(54) *Ibid.*, p.199.

및 이에 대한 지침의 불충분 ④ 사적사용을 위한 지침의 부족 및 애매한 한계성 ⑤ 도서판등(等)이라는 도서판에 대한 정의의 모호함 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저작권 사용료 지불방식은 각 도서판의 정책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나 여러 국가들이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처하고 적법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 권리자의 권리를 집중으로 관리, 처리해주고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77년 Copyright Clearance Center (CCC)가 저작자, 출판업자, 이용자 대표들에 의해 설립된 민간주도의 비영리 법인으로서 미국 및 세계 여러 나라로 부터 온 수탁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다. 그외 서독의 Verwertungsgesellschaft Wort, 스웨덴의 BONUS, 노르웨이의 KOPIFAG, 오스트리아의 Stichting Reprorecht, 덴마크의 Copy Dan, 페란드의 Kopiosto, 오스트레일리아의 Copyright Agency 등이⁽⁵⁵⁾ 미국의 CCC와 같은 저작권 집중처리 기구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83년 현재 연간 총도서 출판량 중 56%가 초판발행 도서이고 초판 발행량의 22%가 번역서적이며⁽⁵⁶⁾이는 1984년 현재 30%⁽⁵⁷⁾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저작권 조약에 가입할 경우 도서판 업무 또한 가중됨은 물론이다. 개정안 제76조~제78조에 비영리목적의 저작권위탁관리업 제도를 신설한 것도 집중처리의 필요성을 인정한 조치라고 평이된다.

V. 결 론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을 도서판 복제물 제공봉사를 위해 적법하게 사용함으로써 저작자와 이용자의 요구를 균형있게 충족시켜 주는 것은 사서의 중요한 임무이며 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

(55) 대한출판문화협회, “각국의 저작권 집중처리실태,” *출판문화*, 219 (1983.12), p.25.

(56) 本件, *op. cit.*, p.27.

(57) “국제 저작권 조약가입.” *조선일보*, 1984.12.7, p.1, 10.

은 많은 문제점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이 문제점을 한국 저작권법이 개정됨으로써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저작권은 그 저작물이 창작되는 순간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무방식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모든 저작물은 요식절차 없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게 된다.

② 저작권 보호의 대상의 범주가 확대됨으로써 저작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적어지게 된다.

③ 보호기간이 평생+50년으로 연장되어 그동안 공공 영역에 귀속되어버린 저작물일 경우에도 일일이 그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④ 저작권의 전부 혹은 일부를 양도, 상속, 기증,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이용할 때마다 각각 저작권의 소유자를 추적해야 한다.

⑤ 상호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외국인 저작물 보호규정과 외국의 자료를 이용할 때는 그 나라의 저작권법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어야 한다.

⑥ 인접권을 신설하였기 때문에 그 저작물의 실연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의 권리에 대해서도 지식이 있어야 한다.

⑦ 집합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수가 많아 현재 누가 저작권의 소유자인지 일일이 추적해야 한다.

⑧ 강제허가제에 대한 규정도 저작권보호의 제한규정으로서 이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한다.

⑨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의 적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

⑩ 정당한 사용(fair use)의 적용은 저작물의 형태와 속성에 따라 유권해석을 각각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

⑪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에 대한 규정에서는 「도서관」이란 정의와 한계성이 모호하여 발생하는 문제

⑫ 도서관 상호대차를 이용하는데 따르는 여러 문제

④ 저작권 사용료 지불에 따르는 여러 문제

이상과 같이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해 보았으나 실제봉사에 접했을 때의 구체적인 문제는 일일이 다 거론할 수 없을만큼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다시 말하면 이용자의 준법정신, 사서의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계몽과 제도적인 대책 등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특히 국제적 조약의 가입과 도서관 넷워크의 이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 등은 장래의 문제로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측면과 사서의 교육 및 홍보의 측면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① 한국 도서관 협회에서는 저작권관계 협의회를 두어 도서관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연구 조사하게 될 것. ② 문공부 산하에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이외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기구를 두거나 문공부에 저작권국을 두어 저작권법의 모순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비영리 법인인 저작권 위탁관리업을 육성하여 많은 법인이 설립되게 할 것

사서의 교육 및 홍보의 측면에서 ① 저작권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행할 것 ② 도서관 업무용으로 저작물의 종류별 저침자를 작성하여 배치할 것. ③ 저작권법에 관한 자료철을 작성하여 최신정보를 입수하여 배치할 것 ④ 도서관월보에 저작권법에 관한 기사를 제제하여 사서들의 관심을 주지시킬 것 ⑤ 교육기관 소속의 도서관일 경우 고사들에게 fair use 등의 저작권보호의 제한규정에 대해 계몽을 시킬 것 ⑥ 저작권법에 대한 주제별 서지를 작성하여 배포할 것.

도서관 봉사에 있어서 복제물 제공자로서의 사서나 제공을 받는 자로서의 이용자는 다같이 저작권법에 관해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이 어떠한 제한도 없이 자유로이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라 복제를 적법하게 행하게 하는 규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한국문헌)

- 1) 國會圖書館立法調查局. 著作權의 國際的 保護. 서울 : 국회도서관, 1978.
- 2) 대한출판문화협회. “각국의 저작권 집중처리실태,” *출판문화*, 219 (1988.12), pp. 24—27.
- 3) 문화공보부. 著作權法改正法律案. 1984.
- 4) 유비스코편. 白承吉, 朴觀喜 역. 著作權이란 무엇인가. 서울 : 보성사, 1983.
- 5) 李斗漢. “著作權法과 出版,” 國會圖書館報, 21:3 (1984.5), pp. 22—39.
- 6) 李淳子. “著作權法과 圖書館의 複寫物提供奉仕,” 國會圖書館報, 19:5 (1982. 9/10), pp. 10—18.
- 7) _____, “著作權法改正은 왜 필요한가,” 國會圖書館報, 21:3 (1984.5), pp. 5—14.
- 8) 허희성. 國際著作權動向과 우리. 서울 : 대한출판문화협회, 1984.
- 9) 黃迪仁. 著作權法改正法律案에 관한 意見書. 서울 : 한국저작인 협회, 1984.
- 10) Hahn Soon-chung. “The Copyright Problems in Library Reprography,” 圖書館學, 제11집(1984), pp. 185—205 (in English)

(외국문헌)

- 11) Billings, Roger D., Jr. “Fair Use under the 1976 Copyright Act: The Legacy of Williams & Wilkins for Librarians,” *Library Trends*, 32:2(Fall 1983), pp. 183—198.
- 12) De Gennaro, Richard. “Copyright, Resource Sharing, and Hard Times: A View from the Field,” *American Libraries*, Sept. 1977, pp. 430—435.
- 13) Holley, Edward G. “A Librarian Looks at the New Copyright Law,” *American Libraries*, 18 (May 1977), pp. 247—251.
- 14) Horowitz, Irving Louis and Curtis, Mary E. “Fair Use versus Fair Return: Copyright Legislation and Its Consequence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35:2 (March 1984), pp. 67—74.
- 15) Hunter, Carolyn Owlett. “Library Reproduction of Musical Works: A Review of Revision,” *Library Trends*, 32:2 (Fall 1983), pp. 241—248.
- 16) Johnston, Donald F., *Copyright Handbook*. 2nd ed. New York: R.R. Bowker, 1982.
- 17) King Research, Inc. *Library Photocopying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 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7.
- 18) Marshall, Nancy H. "The New Copyright Law: A Five-Year Review," *The Bowker Annual of Library & Book Trade Information*. 28th ed. New York: R.R. Bowker, 1983.
- 19) _____, "Register of Copyrights' Five-Year Review Report: A View from the Field," *Library Trends*, 32:2(Fall 1983), pp. 165—182.
- 20) Miller, Jerome K. "Copyright Protection for Bibliographic, Numeric, Factual, and Textual Databases," *Library Trends*, 32:2 (Fall 1983), pp. 199—209.
- 21) Schrader, Dorothy M. "Armageddon in International Copyrights," in Melvin J. Voigt (ed.) *Advances in Librarianship*, (New York: Seminar Press, 1971), pp. 305—355.
- 22) Thatcher, Sanford G. "The New Copyright Law: Guides for Writers, Teachers, and Librarians," *Choice*, July/August 1979, pp. 624—634.
- 23) Troost, F. William. "A Practical Guide to Dealing with Copyright Problems Related to Emerging Video Technologies in Schools and Colleges," *Library Trends*, 32:2 (Fall 1983), pp. 211—220.
- 24) Wall, Raymond A. "Photocopying Rights and Wrongs: a Librarian's View," *Aslib Proceedings*, 34:2 (Feb. 1982), pp. 113—128.
- 25) Wolfe, Mary. "Copyright and Machine Readable Databases," *Online*, 6:4 (July 1982), pp. 52—55.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of Authors for Library Reprography

—A Comparative Examination of the Draft Revision of Korean Copyright Law with the New American Copyright Act of 1976—

Kim, Hyang Shin*

〈Abstract〉

A dramatic development in the new technology of copying materials has presented us with massive problems on reconciling the conflicts between copyright owners and potential users of copyrighted materials. The adaptation to this changing condition led some countries to revise their copyright laws such as in the U.S. in 1976 and in Korea in 1984 for merging with the international or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s in the future.

Copyright defined as exclusive rights given to copyright owners aims to secure a fair return for an author's creative labor and to stimulate artistic creativity for the general public good. The exclusive rights on copyrightable matters, generally for reproduction, preparation of derivative works, public distribution, public performance, and public display, are limited by fair use for scholarship and criticism and by library reproduction for its preservation and interlibrary loan.

These limitations on the exclusive rights are concerned with all

* Fulltime instruct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spects of library services and cause a great burden on librarian's daily duty to provide balance between the rights of creators and the needs of library patrons. The fair use as one of the limitations on it has been coupled with enormous growth of a new technology and extended from xerography to online database systems. The implementation of the fair use and library reprography in Korean law to the local practices is examined on the basis of the new American copyright act of 1976.

Under the draft revision of Korean law, librarians will face many potential problems as summarized below.

1. Because the new provision of "life time plus 50 years' will tie up substantial bodies of material longer than the old law, until that date librarians would need permissions from the owners and should pay attention to the author's death date.
2. Because the copyright can be sold, distributed, given to the heirs, donated, as a whole or a part, librarians should chase down the heirs and other second owners. In case of a derivative work, this is a real problem.
3. Since a work has its protection from the moment of its creation, the coverage of copyrightable matter would be extended to the published or the unpublished works and librarian's work load would be heavier. Without copyright registration, no one can be certain that a work is in the public domain. Therefore, librarians will need to check with an authority.
4. For implementation of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fair use and library reproduction for interlibrary loan, there can be no substantial aggregate use and there can be no systematic distribution

of multicopies. Therefore, librarians should not substitute reproductions for subscriptions or purchases.

5. For the interlibrary loan by photocopying, librarians should understand the procedure of royalty payment.

6. Compulsory licenses should be understood by librarians.

7. Because the draft revision of Korean law is a reciprocal treaty, librarians should take care of other countries' copyright law to protect foreign authors from Korean law.

In order to solve the above problems, some suggestions are presented below.

1. That copyright clearinghouse or central agency as a centralized royalty payment mechanism be established.

2. That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establish a committee on copyright.

3. That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propose guidelines for each occasion, e.g. for interlibrary loan, books and periodicals and music, etc.

4. That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 a copyright office or an official organization for copyright control other than the copyright committee already organized by the government.

5. That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establish educational programs on copyright for librarians through seminars or articles written in its magazines.

6. That individual libraries provide librarian's copyright kits.

7. That school libraries distribute subject bibliographies on copyright law to teachers.

However, librarians should keep in mind that limitations on exclu-

sive rights are not for an exemption from library reprography but as a convenient access to library resources.